

안전관리대행업 [] 등록
[] 변경등록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신규등록 14일 변경등록 5일	
신청인	상호(명칭)				
	대표자 성명		법인등록번호		
	주소				
소재지					
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(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				
변경사유 (변경등록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					

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대행업의 [] 등록, []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(전화번호:)

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등록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정관 1부 나. 사업계획서(사업의 개요, 조직 및 종사원 현황,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의 명세를 포함해야 합니다) 1부 다. 안전관리적합증서 또는 임시안전관리적합증서 사본 1부 라. 안전관리대행에 관한 계약서(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확보방법 및 확보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) 1부 마.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5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1호마목1) 또는 2)에 해당하는 서류 바. 안전관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선박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대행하려는 선박이 「해상교통안전법」 제46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·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. 다만,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5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 2. 변경등록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변경사유서 나. 제1호바목의 서류(안전관리대행 선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하며, 안전관리대행업의 변경등록신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」 제5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

처리절차										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발급 결정	→	발급
신청인		지방해양수산청		지방해양수산청		지방해양수산청		지방해양수산청		지방해양수산청